

산학협력위원회규정

제정 : 2011.07.01
개정 : 2011.11.22
개정 : 2014.11.01
개정 : 2016.03.01
개정 : 2020.03.01
개정 : 2021.12.01
개정 : 2022.10.01
개정 : 2023.10.16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) 본 위원회는 대원대학교 산학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라 칭한다.
<개정 2011.11.22.>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원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의 산학협력활동 및 산학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학협력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.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1.11.22., 2020.03.01., 2021.12.01.>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 대학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적용한다. <개정 2020.03.01., 2021.12.01.>

제4조(위원회의 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1.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·시행,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<개정 2014.11.01., 2016.03.01., 2020.03.01.>
2. 산업체 수요와 미래 산업발전에 따른 인력양성 추진에 관한 사항 <개정 2014.11.01.>
3. 산학연계교육 및 새로운 지식·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·개발에 관한 사항 <개정 2014.11.01.>
4. 산업체기술이전과 산업자문 등 산학협력활성화 추진에 관한 사항 <개정 2014.11.01.>
5. 산학협력 협약체결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<개정 2014.11.01., 2020.03.01.>
6. 산학협력사업의 신청 및 결과,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 <개정 2014.11.01.>

7. 산학협력촉진 및 사업관련 운영규정 자문에 관한 사항 <개정 2014.11.01.>
8. 학과별 산학협력협의회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<신설 2020.03.01.>
9.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<개정 2014.11.01.>
10. 내지 13. <삭제 2014.11.01.>

제 2 장 조 직

- 제5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- ② 위원장은 입학학생취업처장이 되며, 교무처장, 산학협력단장, 창업보육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, 위원장이 추천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내부위원(전임교원)과 외부위원을 둘 수 있다. <개정 2014.11.01., 2020.03.01., 2022.10.01., 2023.10.16.>
- ③ 직원 1인을 간사로 보하여 행정 지원하도록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6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,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. <개정 2022.10.01.>

- 제7조(분과위원회) ① 분과위원회는 학과별로 구성하며,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 결재에 따른다. <개정 2021.12.01.>
- ② <삭제 2014.11.01.>

- 제8조(회의) ① 회의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하며, 개최일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 <개정 2020.03.01.>
- ③ 간사는 회의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하며, 위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1.12.01.>

제9조(보고 및 시행)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장이 총장에게 보고하고,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 <개정 2020.03.01., 2021.12.01.>

제10조(위원회의 운영 등)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.

제 3 장 삭 제 <2020. 03. 01.>

제11조 <삭제 2020.03.01.>

부 칙

이 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이 규정은 2011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교명변경) 본교의 교명을 대원대학에서 대원대학교로 변경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.